#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4 - 007 - 17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4. 4. 24.

##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징 금 : 원
  - 나. 과 태 료 : 4,5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이 유

#### I. 기초 사실

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舊 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7. 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2. ~ '24. 1.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 . . 기준으로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sup>1)</sup>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 수
계			

##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 . . ~ . . \* (파일, 데이터 묶음)을 공개설정('21.1.8.)하여 외부에서 해당 인터넷주소를 알면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다.

\*

- 1) (유출 규모 및 항목) 건<sup>\*</sup>의 이용자 개인정보<sup>\*\*</sup>가 유출되었다.
  - \* 건은 인터넷망에 공개된 그림파일(개인정보 마스킹)의 원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 규모
  - \*\* 성별, 전화번호, 이름, UUID(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고유식별자), 생년월일, 이메일,

##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	시	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
′22. 5. 9.	10:41	
22. 3. 3.	20:10	
′22. 5.	10.	
′22. 5.	11.	
′22. 5. 17.	15:14	
′22. 7. 6.	23:38	
′22. 7. 7.	22:42	
22. 1. 1.	23:08	
'22. 7. 8.	09:57	
22. 1. 0.	17:30	

일 시		유출 인지 및 대응 내용
	19:03	

##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의 옵션을 공개 설정 하여 고객정보가 권한없는 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다.

####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5. 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2. 7. 7.에 유출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3. 8.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sup>2)</sup>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sup>3)</sup>(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

<sup>3)</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의 옵션을 공개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22. 5. 9.에 회원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22. 7. 7.에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舊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舊 보호법 §29	§48의2① 제2호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4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자신고에 대한 특례	舊 보호법 §39의4①	§48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

#### Ⅳ. 시정조치(안)

####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 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 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기준금액

## 1) 고의 · 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

<sup>4)</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약 0.005%로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 약 0.005%(보유 중인 개인정보 수 : 건, 유출된 개인정보 수 : 건)

## 3) 기준금액 산출

舊 시행령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 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서비스(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사건 발생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 . . .)부터 위반행위일(' . . .)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월 ~	평 균**
관련 매출액*	-	-		

-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 사업개시일( )부터 위반행위일( )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 (' ...~ . .)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천 원을 감경한다.

##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산출 내역>

①기준금액	②필수적 가중・감경	③추가적 가중・감경	④최종과징금
•직전 3개 사업연도연평균 매출액( 천 원)•연평균 매출액에 2.1%적용 (중대한 위반*)	•단기위반으로 가중   없음   •최초위반으로 50%   감경   ( 천 원)	•조사협력, 자진신고로 20% 감경 ( 천 원)	천 원
⇒ 천원	⇒ 천 원	⇒ 천 원	

<sup>\*</sup> 중대한 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이 없고 ▲유출피해 규모 5% 이내 2개 요건에 해당

####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5)(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sup>5)</su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대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 한다.

####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sup>\*</sup>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 \* 가(舊 시행령 제39조의4제1항 유출통지 관련), 나(舊 시행령 제39조의4제1항 유출신고 관련)
-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b>안전조치의무</b>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600만원	-	420만원	180만원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600만원	90만원	420만원	270만원
	450만원			

< 과태료 산출내역 >

#### 4.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우	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舊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과태료 부과 180만원
1		舊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2024. 4. 24.	과태료 부과 270만원

\* 舊 보호법 :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2024년 4월 24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V.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제12호의3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2024년 4월 24일

위 원	·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	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위	원	조 소 영 (서 명)